

코로나-19, 해외입국자에 대한 대응조치

2020. 9. 18 (금) 기준

* 아래 사항은 정보제공 차원에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, 중앙 방역 대책본부 홈페이지, 서울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사례정의

* 출처 : 중앙방역대책본부 검역관리팀 지침

| 연 번 | 구 분 | 내 용 |
|-----|-----------|---|
| 1 | 확진환자 |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|
| 2 | 의사환자 |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|
| 3 | 조사대상 유증상자 |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, 14일 이내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* 주요 임상증상 : 발열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인후통, 후각 또는 미각 소실, 폐렴 등 |

■ 검역대응 절차

| 구 분 | | 검역조사 절차 |
|---|---------------|--|
| 유증상자 (내국인, 외국인 모두 포함) | | 1. 진단검사 실시(공항 내 임시대기시설) 2. 판정 결과 · 양성)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· 음성) 내국인, 장기체류 외국인 : 자가격리 / 단기체류 외국인 : 시설격리 |
| 무증상자 | 내국인, 장기체류 외국인 | 1. 자가격리 실시(14일, 의무적) 2. 입국 3일 이내 진단검사(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수행) 3. 판정결과 · 양성)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· 음성) 자가격리 지속 |
| | 단기체류 외국인 | 1. 공항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실시(임시생활시설 입소) 2. 판정결과 · 양성)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· 음성) 시설격리 ☞ 시설격리 이용료 기준 1일 최대 15만원 (시행 2020.06.23) |
| 격리 면제 대상자 * A1(외교), A2(공무) 또는 입국 전 한국 대사관 에서 '격리면제서'를 사전 발급 받은 경우 | | 1. 공항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실시(임시생활시설 대기) 2. 판정결과 · 양성)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· 음성) 능동모니터링,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|
| 특이사항 | | ○ 7.13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기존4개국에서 추가로 2개국을 지정 (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방글라데시, 파키스탄+우즈베키스탄, 필리핀) ○ 7.20일부터 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임시생활시설 입소자는 입소 시, 입소 10일차, 입소 14일차 또는 퇴소 시 등 총 3차례 진단검사 진행 (4주간 실시, 상황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) ○ 9.1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해 안산 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(1인당 140만원 징수) ○ 8.3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와 러시아 출항 모든 선박의 선원은 'PCR음성확인서' 의무 제출해야함. ○ 8.17(월)부터 방역조치를 위한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 외국인에 대해 치료비 전액 자부담 ○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 자부담 시행 - 적용대상 및 시기: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(8.24 0시 이후 입국자) ○ 시설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중도 출국 제한 관련 - (변경 전) 입소자 희망 시 중도 출국 허용 - (변경 후) 9.8부터 입소자 중도 출국 불허 ※ 단 출발 또는 귀국 국가로의 중도 출국에 대해서는 출국 사유건강 상 이유 가족의 임종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 등에 대해 시설 단정의 판단 하에 예외적 허용 - 선원 조기 최소 및 출국(출항)은 기존과 동일하게 허용 |

■ 해외에서 입국 시 이동안내(서울 거주자 한함)

* 출처 :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

① 자차 이용안내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자치구별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</p> | <p>보건소 선별진료소 진단검사</p> <p>* 여권, 항공권 지참</p> | <p>진단 검사 후 바로 거주지 이동</p> | <p>14일간 자가격리!</p> <p>*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자가격리 필수</p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
② 특별수송택시 이용안내 (이용료는 자부담 6만 5천원~13만원, 구역별 정액요금, 24시간 운영)

| | | | |
|--|---|--|---|
| <p>서울택시 안내데스크에서 접수 후 차량배차</p> <p>▶ T1은 12~13번 게이트 중간 ▶ T2은 2~3번 게이트 중간</p> | <p>보건소 선별진료소 진단검사</p> <p>* 여권, 항공권 지참 * 당일검사가 어려울 경우, 예약 후 익일검사</p> | <p>승객 검사 후 특별수송택시 재탑승</p> <p>* 배정된 택시는 검사 종료시까지 기다립니다.</p> | <p>자택 이동 후 14일간 자가격리!</p> <p>*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자가격리 필수</p> |
|--|---|--|---|

③ 특별수송버스 이용안내 (이용료 : 16,000원)

| | | | |
|--|--|--|---|
| <p>입국 수속 후, 인천공항 T1(1층), T2(지하1층) 대합실 이동</p> | <p>노선확인 및 탑승 신고서 작성</p> <p>▶ 탑승신고서는 각 구청에 통보, 진단검사 및 자택 이동 등에 활용 (하차이후에 거주지 이동할 자차없는 부득이한 경우, 구청차량 요청가능)</p> | <p>버스탑승 및 자치구별 하차지(보건소 선별진료소) 로 이동</p> | <p>구청 담당자 안내에 따라 진단검사 후 거 주지로 이동</p> <p>(개인차량을 우선이용 권고 없을 경우에만 구청차량 이용)</p> |
|--|--|--|---|

■ 해외입국자 입국시 이동관련 주의사항 안내

*출처:중앙방역대책본부

| 구 분 | 내 용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해외에서 항공기 탑승 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, 탑승하지 않기 ○ 배웅객이 오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○ 항공기 탑승 시간에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하여 혼잡 피하기 ○ 항공기 예약 및 발권은 가능하다면 무인기기 이용하기 |
| 항공기 탑승 중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항공기 내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하기 ☞ 기내식 등 음식섭취 시에는 대화자제 ○ 화장실 등 항공기 내 공용 공간 사용 전후 손소독 하기 |
| 국내 입국 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시 마스크 착용하기 ○ 개인수하물 찾기 전, 후 손소독 하기 ○ 이동 시에는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이용하기 ☞ 지자체 제공 수단, 전용 버스열차택시 등 이용하고 손소독 철저, 음식섭취 및 대화 자제 ☞ 자차 이동 시 맞이객과 악수 등 신체접촉은 피하고, 뒷좌석에 앉는 등 거리두기 * 맞이객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, 이동 중 주기적으로 차량 환기 실시 ○ 거주지 도착 후에는 짐가방 등 소지품 표면 소독 실시 * 입국자 탑승 차량 좌석과 손잡이 등 손이 닿은 곳의 소독 실시 ○ 격리통지서 발급 시 안내된 격리수칙(자가, 시설 등)철저히 준수하기 |